

## 연천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2016. 9. 8 ] 조례 제33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제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연천군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증축·개축·용도변경·대수선·수선(창호·단열재·설비교체로 한정한다)
3. 실내 마감재를 친환경 자재(환경·탄소 성적표지 제품 등)로 사용
4. 전기·조명시스템 등을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관리공단 인증)으로 변경(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
5.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개조)
6.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
7. 빗물이용시설 설치
8. 폐열회수설비(열교환 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9.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
10. 냉·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 보일러, 냉·난방기기 등)
11.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12.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연천군 소유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등) 군수는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연천군 건축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하며,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0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